

제 2 절
공사(잔)대금

발전소 공사착공전 설계용역비 사건



사건번호 | 중재 제12111-0233호

구분	내용
신청원인	공사(잔)대금
신청금액	KRW 877,660,000
판정금액	KRW 543,298,000 (인용률: 61.90%)
비용부담	신청인 4 : 6 피신청인들
처리기간	-129일
종류	민간
중재판정부	3인 (법조계, 법조계, 실업계)
핵심단어	용역대금, 착수금, 공사착공



판정요지

- [1] 발전소 컨설팅 및 공사계약 체결 후 컨설팅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지자체의 인·허가 불허로 인하여 발전소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급인에게 해당 컨설팅비 및 약정상 착수금의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2] “착공시 컨설팅 대가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을 때, ‘착공’의 의미
- [3] 중재신청서 등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때,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령간주하여 심리가 속행된 사례



판정요약

1. 사실관계

- 신청인(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과 피신청인들(영농조합법인 및 그 자회사)은 2007. 5. 7.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및 건설공사’ 계약을 피신청인2 명의로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위 공사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 위 설계용역 완료 후 피신청인들은 건설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부 군청에서는 환경문제 등을 들어 불허하고, 나머지는 피신청인들 스스로 철회하였다.

2.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설계용역계약 대금(컨설팅비) 및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위 공사계약에 ‘착공시’ 컨설팅 대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컨설팅비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위 공사계약상 ‘착공’의 의미는 실제 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설계용역 업무가 완료되어 그 결과물이 인도된 때로 해석함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컨설팅비 지급책임이 있다.
-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가 나지 아니한 것은 환경문제 등에 기한 것일 뿐 그 전부가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로 불허가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착수금만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정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543,298,000원 및 그 중 금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나머지 금 143,298,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신청인의, 나머지 6은 피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 취지

1.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에게 금 877,660,000원 및 그 중 금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나머지 금 477,66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전기점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1은 산양산삼 재배 판매 등을 주영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며, 피신청인2는 위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중재합의 및 송달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2는 2007. 5. 7.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컨설팅 및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하였다(갑 제4호증).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비용마련을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고, 계약 체결 후 컨설팅 금액의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2009. 9.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그 명의로 보내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활동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피고로 하여 Z법원 2XXX가합XXXXXX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6회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2012. 9. 20. 중재합의가 있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신청인은 그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원에서는 피신청인들의 등기주소, 대표이사의 주거지 주소, 판결에 표시된 송달장소 등에 신청서 및 심리기일통지서 등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 소송시의 대리인에게도 연락하였으나 피신청인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중재법 제4조 제3항은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중재신청서 및 심리기일통지서는 피신청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당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속행하였다.

3.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심리의 전 취지를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2007. 5. 7.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및 건설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신청인2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 규모는 10MW로 정하여 추진하되 상호 협의하여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2조), 신청인은 태양광발전소 대상부지 추천 및 매입업무 보조와 발전사업 인허가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와 설계, 자재구매, 설치공사, 시운전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컨설팅에 대한 대가지급은 개별적으로 수행된 물량에 대하여 1MW당 50,000,000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공사대금은 선금금으로 개별적 공사에정금액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대가는 매월 기성고로 지급하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라 신청인은 대상부지 지역설정, 현장조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방문, 토지소유자 및 지가 파악 등의 역무를 수행하여 A지역 등을 대상부지로 추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위 추천에 기하여 99필지의 토지를 피신청인1 또는 피신청인2 명의로 취득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피신청인2가 B도지사로부터 A지역에 설비용량 2000kw, B지역에 3000kw, C지역에 3000kw등 총 8M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데 업무를 보조하였다.

- (3)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외 갑과 2007. 11. 30.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설계용역계약'을, 2007. 12. 10.경 'D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사실을 피신청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설계용역 착공시 대금의 30%를 지급하고, 인허가 완료시 60%, 준공시 10%를 지급하고, 지체시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외 갑은 위 설계계약에 따라 건설부지에 대한 측량, 사전환경성 검토, 설계 역무를 수행하고, 2009. 11. 25. 입안제안서 등 설계용역에 관련한 서류 일체를 피신청인들에게 인도하였다. 신청외 갑은 신청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착수금 지급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2007. 12. 24. 신청외 갑에게 금 93,798,000원, 금 49,500,000원 등 합계 금 143,298,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피신청인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부 군청에서는 환경문제 등을 들어 불허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였다.

신청인은 2008. 4. 28. 피신청인들에게 컨설팅비 및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차일피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08. 5. 이후 금융기관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중 컨설팅계약 부분은 신청인이 부지 등의 물색 등 계약에 정해진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에게 계약에 정한 금 400,000,000원(= 8MW ×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은 피신청인들의 공동사업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1 스스로 피신청인2의 채무를 자신이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양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항에 ‘착공시’ 컨설팅 대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소송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그 지급의무를 인정함은 물론 지급시기의 미도래를 다투지 않은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착공시’란 의미는 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라고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인 ‘컨설팅 업무 완료시’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사계약 부분은 인허가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착수금으로 약정한 금 143,298,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인허가가 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신청외 갑과의 계약에 정한 공사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가 나지 아니한 것은 환경문제 등에 기한 것일 뿐 그 전부가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로 불허가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은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신청인과 신청외 갑과의 계약에도 인허가 이후에 용역대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의하면 ‘착공 시’ 선금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기성고별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착공’의 의미는 실제 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설계용역 업무가 완료되어 그 결과물이 인도된 때로 해석함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신청외 갑과의 계약사실이 피신청인들에게 통지되고 양해 하에 진행된 이상 실제 신청외 갑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신청인들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543,2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청구일인 2008. 4. 28.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8.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 143,298,000원에 대하여는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중재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중재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